

#### 1. 참여의 범위

ICE1
㈜엘지이노텍
㈜엘지이노텍 전장사업부 CGU 사용가치를 고려한 비교대상장부가액 손상 여부 검토
㈜엘지이노텍 전장사업부 CGU
사용가치 평가
LG 이노텍 전장사업부 CGU 사용가치 평가보고서
한영회계법인
686,298 백만원
905,964 백만원
2022-12-31
DCF

#### 2. 수행한 절차

####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평가기관의 전문가적 적격성에 대한 검토
- 제출된 평가결과 검토
- 평가보고서상 사용가치 산정 내역 재계산 검토
- 평가보고서상 추정 요소별 계산의 적정성 검토
- 평가결과 내용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기초로 질의사항 작성
- 질의사항에 대한 평가기관의 답변자료 및 추가제공 자료 분석
- 적용한 평가방법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 사항에 대한 검토

## 단, 수행한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적용한 회계정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 회사가 활용한 내부 또는 외부평가전문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검토
- 경영진이 승인한 사업계획 이용에 대한 확인
- 산정된 비교대상장부금액에 대한 검토
- 평가기준일 이후 변동된 사항에 대한 검토
- 평가보고서에 포함된 기초자료 등 재무정보의 적정성
- 최종 평가보고서가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효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 비영업용자산 및 이자발생부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공시사항의 완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평가기준일 이후 영업환경, 시장이자율, 환율 등 후속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3. 검토사항

Ref	검토 범위	검토 내용 요약	요소 검토 의견	요소의 적합성
평가 보고 서 8-9	평가방법론	<ul> <li>평가자는 회사 및 해당 산업의 특성과 입수가능자료 등을 고려하여 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 중 현금흐름할인 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적용함.</li> <li>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문단9에 따르면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 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되며, 동 기준서 문단62에 따라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평가자는 이익접근법을 적용함.</li> <li>평가자가 평가방법으로 활용한 현금흐름할인 모형은 K-IFRS 제1113호, 문단B12에 따라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평가기법에 해당되므로, 평가자가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한 평가방법론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li> </ul>	Neutral	Appropriate
CGU 질의 회신 번호 16	매출액	<ul> <li>평가대상 사업부의 매출은 제품매출, 상품매출, 기타매출, 내부매출, 내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자는 이 중 상품매출 및 샘플판매 등의 기타매출의 경우 제품매출이 발생하는 프로젝트 내 포함되어 발생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제품매출로 통합하여 추정하였음.</li> <li>추정기간 동안의 제품매출 추정 시, 평가자는 평가대상회사 제시 사업계획을 기초로 '23년까지의 수주 관련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100% 준용하고, '24년 이후 수주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일정 비율의 Haircut('24년 70%, '25년 60%, '26년 20%)을 적용하였으며, 제품 내 세부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음.</li> <li>매출 반영 비율 설정 근거에 대해 평가자에게 질의한 결과, 수주가 결정된 매출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였으며, 수주 예정 매출의 경우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조정하되, 매출 역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출 반영 비율을 차등 설정하였다고 답변하였음.</li> <li>평가자가 매출 추정 시각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매출을 추정한 것과, 수주가 확정되지 않은 향후 매출액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조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li> <li>다만, 평가자가 평가대상회사 사업계획을 기초로 매출액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영자의 최종 확인을 득한 경영자확인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평가기관이 적용한 추정기간 매출액은 평가대상회사의 사업계획 달성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 및 변동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추정치와 실적치의 차이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li> </ul>	Optimistic	Appropriate
CGU 질의 회신 번호 17	매출원가(재료비)	<ul> <li>평가자는 전장사업부 내 세부 제품군별로 평가대상 사업부 제시 사업계획상 재료비율을 적용하여 재료비를 추정하였음.</li> <li>회사제시 사업계획상 제품군별 재료비율은 차량LS사업을 제외하고는 추정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가정되어 있음. 재료비율 개선 근거에 대해서 평가자에게 질의한 결과, 재료비율이 높은 사업 및 매출처向 매출 비중이 추정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점, 구매 Cl 및 양산 확대를 통해 업무 협상력과 실행력을 발휘하여 재료 구매액을 감소시키려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반영된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음.</li> <li>평가자가 매출 추정 시 각 제품군별로 재료비율을 구분하여 재료비를 추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li> <li>다만, 향후 회사가 제시한 재료비 절감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li> </ul>	Optimistic	Appropriate





Ref	검토 범위	검토 내용 요약	요소 검토 의견	요소의 적합성
		이 존재하므로 평가자가 적용한 연도별 제품군별 재료비율의 실제 달성여부에 대하여 감사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CGU 질의 회신 번호 18	매출원가(인건비)	<ul> <li>평가자는 매출원가 인건비를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li> <li>구성요소별 적용 가정은 다음과 같으며, 요소별로 각각 검토함.</li> <li>(1) 급여</li> <li>평가자는 추정기간 동안의 급여 추정 시 연도별 인원 수에 인당 인건비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음.</li> <li>평가자는 인원 수 추정 시 평가대상 사업부 제시 사업계획상 연도별 인원수를 기초로, 사업계획 매출액 대비 평가보고서 상 매출액의 연도별 비율을 고려하여 인원수를 조정하였음. 다만, 이 경우 FY24 이후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감소하는 가정이 수반됨에 따라서 평가자는 FY24 이후 FY23 인원 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추정기간 인원 수를 설정하였음.</li> <li>회사 및 평가자 답변에 따르면, 회사의 매출은 생산설비의 작동을 담당하는 인원이 일정 규모이상 확보가 되면 매출 증가에 따른 인원수의 정비례한 증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평가자가인원 수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은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li>인당 급여의 경우 전년도 1인당 급여에 EIU 제시 명목임금상승률만큼 상승함을 가정함.</li> <li>평가자가 인건비 추정 시 외부 Data(국내 예상 임금상승률)를 준용하여 추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li>(2) 상여</li> <li>평가자는 FY22 급여 대비 상여금 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음.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상여금의 경우 FY20~FY22 3개년 비율 평균이 27.3%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에도 급여 대비 상여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평가자의 가정이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li>(3)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li> <li>평가자는 FY22 급여 및 상여 대비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평가자의 가정이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ul>	Neutral	Appropriate



Ref	검토 범위	검토 내용 요약	요소 검토 의견	요소의 적합성
CGU 질의 회신 번호 19	매출원가(변동비)	<ul> <li>평가자는 변동비성 매출원가를 접대비, 여비교통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등 6개 항목으로 구분 하였으며, 비경상요소를 고려한 후의 FY22 비목별 매출 대비 비율 실적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됨을 가정함</li> <li>과거 변동비의 비경상요소를 고려한 점, 최근 발생효과를 고려한 점, 매출 대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라는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자의 가정이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ul>	Neutral	Appropriate
CGU 질의 회신 번호 20	매출원가(고정비)	<ul> <li>평가자는 매출원가 고정비성 항목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등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비경상요소를 고려하여 최근 발생비용(비경상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경상요소를 제외한 발생비용)이 추정기간동안 EIU 제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함.</li> <li>과거 고정비성 비용의 비경상요소를 고려한 점, 최근 발생효과를 고려한 점, 고정비성 영업비용의 경우 추정 시 외부 Data(국내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를 준용하여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자의 가정이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ul>	Neutral	Appropriate
CGU 질의 회신 번호 21	판매비와관리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ul> <li>평가자는 판매비와 관리비/연구개발비 인건비를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li> <li>구성요소별 적용 가정은 다음과 같으며, 요소별로 각각 검토함.</li> <li>(1) 급여</li> <li>평가자는 추정기간 동안의 급여 추정 시 연도별 인원 수에 인당 인건비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음.</li> <li>평가자는 인원 수 추정 시 평가대상 사업부 제시 사업계획상 연도별 인원수를 준용하였으며, 추정기간 동안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연구개발비 인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평가자가 인원 수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은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li>인당 급여의 경우 전년도 1인당 급여에 EIU 제시 명목임금상승률만큼 상승함을 가정함.</li> <li>평가자가 인건비 추정 시 외부 Data(국내 예상 명목임금상승률)를 준용하여 추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li>(2) 상여</li> <li>평가자는 비경상요소(기존 전장사업부 내 차량CM제품군이 광학사업부로 이전됨에 따라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 광학사업부의 실적에 기인하여 전장사업부 성과와는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를 고려한 후의 FY22 급여 대비 상여금 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음.</li> <li>과거 상여금의 비경상요소를 고려한 점, 최근 발생효과를 고려한 급여 대비 상여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자의 가정이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li>(3)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li> <li>평가자는 FY22 급여 및 상여 대비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음.</li> <li>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경우 급여 및 상여 대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평가자의 가정이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ul>	Neutral	Appropriate



Ref	검토 범위	검토 내용 요약	요소 검토 의견	요소의 적합성
EGU 질의 회신 번호 22	판매비와 관리비/ 연구개발비(변동비)	<ul> <li>평가자는 변동비성 판매비와 관리비/연구개발비를 지급수수료, 운반비, 재료비 등 8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비경상요소를 고려한 후의 FY22 실적 매출 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됨을 가정함</li> <li>과거 변동비의 비경상요소를 고려한 점, 최근 발생효과를 고려한 점, 매출 대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자의 가정이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ul>	Neutral	Appropriate
CGU 질의 회신 번호 23	판매비와 관리비/ 연구개발비(고정비)	<ul> <li>평가자는 판매비와 관리비 및 연구개발비 고정비성 항목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보험료,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수선비, 차량유지비, 건물관리비 등 1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비경상요소를 고려하여 최근 발생비용(비경상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경상요소를 제외한 발생비용)이 추정기간동안 EIU 제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함.</li> <li>과거 고정비성 비용의 비경상요소를 고려한 점, 최근 발생효과를 고려한 점, 고정비성 영업비용의 경우 추정 시 외부 Data(국내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를 준용하여 추정한 점 등을고려하였을 때, 평가자의 가정이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음.</li> </ul>	Neutral	Appropriate
CGU 질의 회신 번호 24~ 25	CAPEX 및 상각비	<ul> <li>회사의 유/무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됨.</li> <li>CAPEX: 평가기관은 회사의 사업계획 상 투자계획을 기초로, 매출액 추정 시 적용한 연도별 조정 비율을 고려하여 CAPEX 투자액을 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영구현금흐름 산정에 반영된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li> <li>상각비: 자산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추정하였으며, CAPEX 계획상 포함된 신규자산에 대해서 구분하여 상각비를 추정하였음</li> <li>회사 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매출 발생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CAPEX 규모를 사업계획 이외에는 산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 매출액을 조정한 적용 비율을 이용하여 CAPEX 금액을 조정하였다는 점, 추정기간 동안의 CAPEX 총액이 상각비 총액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자의 가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li> </ul>	Neutral	Appropriate
CGU 질의 회신 번호 26	순운전자본	<ul> <li>운전자본은 영업수익 동인(매출채권) 및 매출원가 동인(제품/상품/재공품, 미지급금), 재료비 동인(원재료 및 매입채무)으로 구성됨.</li> <li>평가자는 운전자본 추정 시 FY21~FY22 운전자본 항목별 회전기일이 유사하게 유지된 점을 고려하여, FY22 운전자본별 회전기일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됨을 가정함.</li> <li>평가대상회사의 과거 운전자본수준 및 운전자본 항목별 과거 2개년 회전기일의 유사성 등을고려할 때, 평가자가 적용한 가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li> </ul>	Neutral	Appropriate



Ref	검토 범위	검토 내용 요약	요소 검토 의견	요소의 적합성
CGU 질의 회신 번호 29	법인세율	- 평가대상회사의 영업이익 규모에 따른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2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음.	Neutral	Appropriate
평가 보고 서 19	할인율 산정방법	- 평가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CAPM)에 의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으며, 평가자의 적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Neutral	Appropriate
CGU 질의 회신 번호 9~ 11	자기자본비용	(1) 유사회사의 선정 - 평가기관은 평가대상회사의 산업코드(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C26299)) 및 전자부품 제조 업 내 국내 상장회사 검토하였음 모집단 내에서 매출 및 영업분야의 유사성이 있는 회사가 없었으므로 표본의 확대를 고려하였으며, 자동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상장사 4개를 산정함 평가자가 유사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평가자가 제시한 유사기업의 선정방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2) 무위험이자율 - 평가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대한민국의 10년 만기 국공채 이자율을 적용함 10년 만기 국공채 이자율은 무위험이자율 산정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값으로, 평가자의 적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시장위험프리미엄 - 평가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던스(7~9%)의 중위값인 8%를 적용함. (4) Size Premium - 평가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Size Premium 가이던스 상 평가대상 사업부의 사용가치 산출액(주주가치)의 범위를 고려하여 3 분위중 Low 에 해당하는 0.6%를 적용하였음 기업 규모 차이 조정을 위해 순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의 사이즈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평가자의 가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5) 베타 1) Observed Beta(관측베타) - 평가자는 Observed Beta에 대해 5년 월간 조정베타를 적용함 5년 월간 조정베타는 베타 산정 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값으로, 평가자의 가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2) Unlevered beta - 평가자는 하마다 모형을 적용하여 각 유사기업의 관측베타에서 유사기업의 부채비율을 고려	Neutral	Appropriate



Ref	검토 범위	검토 내용 요약	요소 검토 의견	요소의 적합성
		하여 Unlevered beta를 산출하고, 각 유사기업의 Unlevered beta의 평균(Mean)값을 가정함.  - 평가자는 부채비율 산출 시 적용되는 각 유사기업의 법인세율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 LTM 기준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적용세율을 추정함.  - 평가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인 하마다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하마다 모형으로 산출된 각 유사기업의 Unlevered beta의 평균(Mean)값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값으로 평가자의 가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3) Re-levered beta  - 평가자는 하마다 모형을 적용하여 각 유사기업의 Unlevered beta의 평균(Mean)값에 유사기업의 명균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여 Re-levered beta을 산출함.  - 평가자는 Re-levered beta 산출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에 대해 목표자본구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22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정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음.  - 평가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인 하마다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하마다 모형으로 산출된 Re-levered beta값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값으로 평가자의 가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CGU 질의 회신 번호 10	타인자본비용	<ul> <li>평가자는 평가대상회사의 신용등급(AA-)을 고려하여, 5년 만기 동일 신용등급 무보증 사채 이 자율 5.38%에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한 세후 타인자본비용 4.14%를 적용함.</li> <li>타인자본비용은 채권자의 요구수익률로 정의되며, 실무적 대용치로 평가대상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 만기의 회사채 수익률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평가자의 가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li> </ul>	Neutral	Appropriate
CGU 질의 회신 번호 10	목표자본구조	- 유사회사들의 자본구조 중 평균값을 목표자본구조로 적용함. 목표자본구조로 유사회사들의 자본구조 중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값으로 평가자의 가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Neutral	Appropriate
평가 보고 서 19	할인율 재계산	- Specialist 재계산 결과는 9.80%이며, 평가보고서 상 WACC은 9.80%로 동일하게 산출되었음.	Neutral	Appropriate



Ref	검토 범위	검토 내용 요약	요소 검토 의견	요소의 적합성
CGU 질의 회신 번호 8	영구성장률	- 평가자는 영구성장률로 1%를 적용함. EIU 제시 중장기 국내 GDP 명목 성장률, CPI/PP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자가 적용한 영구성장률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Neutral	Appropriate
CGU 질의 회신 번호 31	Entry Fee	Entry fee는 전장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공통된 활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고객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보아 매출 발생시 해당 매출에 일정액 차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상 프로젝트 Entry Fee의 상각비는 매출 차감 반영되었으나 실제로는 선지급되어현금은 기유출된 계정에 해당함.  - 따라서, 평가기관은 사용가치 계산 시 DCF를 통해 산출된 영업가치에 Entry Fee의 현재가치를 더해서 사용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Entry Fee 금액 계산 Raw Data를 수령 후 재계산 결과 Entry Fee에 적용된 가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Neutral	Appropriate
CGU 질의 회신 번호 5	현금흐름할인모형 계산의 적정성 검토	평가기관이 사용가치 산정하는 방법으로 활용한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에 대하여 재계산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현금흐름할인모형 계산의 적정성검토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Neutral	Appropriate

## 4. 발견사항

## 1. 경영자 확인서

평가자는 평가대상회사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회사의 사용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영자의 최종 확인을 득한 경영자 확인서를 요청한 상태이며 감사팀에서 수령 및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사업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상회사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추정되었습니다. 평가기관이 제시한 전장사업부 CGU 사용가치는 평가대상회사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현금흐름의 달성 여부에 따라 추후 손상가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기의 주요 항목들과 관련하여 추정치와 실적치 간 차이에 대해 감사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매출액



평가자는 추정기간 동안의 전장사업부 매출 추정 시, 평가대상회사 제시 사업계획을 기초로 '23 년까지의 수주 관련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100% 준용하고, '24 년 이후 수주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일정 비율의 Haircut('24 년 70%, '25 년 60%, '26 년 20%)을 적용하였음. 현금흐름 추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 추정이 평가대상회사 제시 사업계획을 기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당성 여부에 북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추정치와 실적치 간 차이에 대해 감사팀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재료비율

평가자는 전장사업부 내 세부 제품군별로 평가대상 사업부 제시 사업계획상 재료비율을 적용하여 재료비를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량 LS 사업을 제외한 제품군들의 재료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가정되었음. 여기에는 재료비율이 높은 사업 및 매출처向 매출 비중이 추정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점과 구매 CI 및 양산 확대를 통해 업무 협상력과 실행력을 발휘하여 재료 구매액을 감소시키려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획이 실제로 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평가자가 적용한 연도별 제품군별 재료비율의 실제 달성여부에 대하여 감사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발견 사항 이외 감사 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문서 Ref.	Торіс	감사 팀 F-up 이 필요한 사항
N/A	N/A	N/A

#### 6. 검토 결과

본인은 DPPL 18-01에 따라 상기 1. 에서 정리된 참여의 범위에 대하여 Valuation Specialist로서 주식회사 LG이노텍의 재무제표 감사업무에 참여한 바, 상기 4. 발견사항에 기술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평가자가 합리적인 가정과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판단함